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가 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자 등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
5.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하수급인)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의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보증사고 발생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
4. 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또는 하도급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2.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3. 선금 또는 기성금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기성내역 및 대금수령내용(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의 사실
4.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이거나, 당초 대금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

-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
3.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타절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제7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사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을 없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